

서울특별시송파구고시 제2017-67호

거여·마천재정비촉진지구
마천1,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-405호(2005.12.16.)로 거여·마천 뉴타운 지구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.)로 거여·마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294호(2008.08.28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·고시되어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98호(2011.04.21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되었으나, 마천3재정비촉진구역은 2013.06.13. 대법원판결(판결번호 : 2013두4262)로 마천1재정비촉진구역은 2014.03.13. 대법원판결(판결번호 : 2012두25238)로 정비구역 지정이 취소됨으로써,

2.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결 요건인 정비구역 지정이 대법원 판결로 취소되어 거여·마천재정비촉진지구 내 마천1,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「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」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, 같은 법 제16조의2 제5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2017년 5월 25일

송 파 구 청 장

□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내역

- 가. 명 칭 : 마천1,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
나. 사업위치 :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194-1 일대 외 1개소
다. 면 적 : 171,798㎡(마천1구역), 133,830㎡(마천3구역)
라. 소재지 : 서울시 송파구 194-1 4층(마천1),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363-12
2층(마천3)
마.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 : 2012. 3. 19. (마천1구역), 2012. 3. 21. (마
천3구역)

□ 취소사유

「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」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
한 선결 요건인 정비구역 지정이 대법원 판결로 취소되어 조합설립추진위원
회를 취소함.

□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일 : 2017. 5. 25.